

2005. 12.

其他案件審查報告書

- 서울시 제3공무원 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안 의견제시의 건
-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(보건위생시설:화장장,남골 시설)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

산업건설위원회

기타안건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안 건 명	제안일자	회부일자	상정일자	의결일자	제안설명
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 계획시설 (보건위생시 설:화장장, 납골시설)변 경결정 의견제시의건	2005. 12. 9	2005. 12. 12	2005. 12. 12	2005. 12. 12	지역개발 과장
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결정(안) 의견제시의 건	2005. 12. 9	2005. 12. 12	2005. 12. 12	2005. 12. 12	지역개발 과장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결정(안) 의견제시의 건

-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교육훈련시설 중 제1공무원수련원(속초), 제2공무원수련원(서천)에 이어 수안보에 내륙휴양형 제3공무원수련원을 건립하고자 함에 따라
-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수안보 안보리 15번지 일원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원의 목적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「관리지역」을 「계획관리지역」으로 세분화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임

나.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(보건위생시설:화장장, 납골시설)변경결정 의견제시의건

○ 도시계획의 개요

- 위치 : 충주시 목벌동 산 39-2번지 일원
- 용도지역 : 관리, 농림지역
- 시설명 : 보건위생 시설(화장장, 납골시설)
- 부지면적 : 8,617평
- 사업비 : 18,880백만원(국 5,739 도 1,555 시 11,586)
- 사업기간 : 2000년 ~ 2006. 6월

○ 주요 결정(변경) 내용 : 도시계획 면적 증 13,545m²

시설구분	위치	면적 변동 내용			비고
		당초	변경	증감	
화장장	목벌동 산38-2	9,232	9,821	증589	
납골시설	"	25,608	38,564	증12,956	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(안) 의견제시의 건

- 본 안건은 서울시공무원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지난 100회 임시회시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이고

- 본 안건은 관련실과 및 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고 지구 단위계획(안)에 대한 공람공고를 거친 사항이며 관련법 규와 절차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충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.
- 서울시 공무원수련원 건립으로 수안보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충주시 전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향후 수련원 건립시 관련법규를 준수함을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나.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(보건위생시설:화장장, 납골시설)변경결정 의견제시의견

- 매년 막대한 면적의 묘지면적을 잠식당하는 기존 매장 문화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화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온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이 2004년 3월 2일 공사착공을 한 이래 50%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9월이면 정상가동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

5. 질의·답변 요지

가. 서울시 제3공무원수련원 건립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(안) 의견제시의 건

- ▶ 질의 : 서울시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가 입주를 하고자 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지?
- 답변 : 기업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하겠음

나.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(보건위생시설:화장장, 납골시설)변경결정 의견제시의건

- ▶ 질의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의견서 채택 (각1건)

7. 불임 : 의견서 2부

의 견 서

□ 의안명 :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(보건위생
시설 : 화장장, 납골시설)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

□ 심사경과

- 의안번호 : 제 637 호
- 상정일자 : 2005년 12 월 12 일
- 의결일자 : 2005년 12 월 12 일
-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
조 제5항

□ 의 견

- 충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『화장장 및 납골당』 신축공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작된 사업이나 공사중 법면 붕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
- 사후에도 철저한 감리를 통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견실한 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

2005. 12. 12
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